



2022-12호

12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



충청남도의회
입법 정책담당관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3 전라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 6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11 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14 천안시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7 서산시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기보일러 설치 지원 조례
- 20 화순군 식품접객업소 가스 정기검사비 지원 조례
- 21 부산광역시 중구 채무 위기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22 광주광역시 동구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27 충청남도 공동주택 재난안전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 37 부산광역시의회, 2022 케이블TV 방송대상에서 “균형발전파트너스상” 수상
- 3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국 광역 시도의회장단 ‘자체 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移屬) 건의안’ 채택
- 41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 가이드북 제작

최근 제·개정 법령

- 45 민법
- 48 사립학교법
- 50 출입국관리법
- 5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5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61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관련질의
- 64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질의
- 67 「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질의
- 70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관련질의



최근 타 사·도 제·개정 조례



- 전라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2. 9.] [전라북도조례 제5179호, 2022. 12. 9., 제정]

이 조례는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설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과 「소방기본법」 제10조의 비상소화장치 등의 기타 설비를 말한다.
2. “안전설비”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의 예방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범위) 도지사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비용의 지원대상) 도지사가 소방설비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제6조(설치비용 지원) 도지사는 소방설비등 설치(보수·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①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설치비용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①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등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비용의 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관계인의 계좌에 설치비용을 입금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이 직접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정산) ① 제7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소방설비등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제11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를」 제3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

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1. 29.] [경상남도조례 제5286호, 2022. 11. 29., 제정]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내재된 갈등을 치유하고 도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통합을 위한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해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도민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도민통합을 위한 전략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에 내재된 갈등의 원인분석과 해소방안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도민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도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도민통합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소

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민통합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도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2명 이내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 및 위원회 업무 소관 실·국·본부장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지명한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나머지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도지사가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안전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간사 각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나 전문적 검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적 신망 또는 덕망이 높거나 관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추진 상황 등의 보고) 위원회는 도민통합과 관련된 업무의 주요 추진 상황 및 업무 성과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한 위원, 자문단의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천안시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산시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기보일러 설치 지원 조례
- 화순군 식품접객업소 가스 정기검사비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중구 채무 위기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동구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12. 13.]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2644호, 2022. 12. 13., 제정]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발달장애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진용로 67-1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아동”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으로서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만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2. “방과 후 돌봄”이란 학교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발달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아동의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돌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발달장애아동의 방과 후 안전한 보호
2. 발달장애아동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발달장애아동의 사회 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발달장애아동 돌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용대상) 돌봄센터의 이용대상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타기관을 이용하거나 거주시설 입소자 등은 이용을 제한한다.

제7조(이용시간) 돌봄센터는 평일 19시까지 운영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

영할 수 있다.

제8조(운영) ① 돌봄센터는 군수가 운영 하되, 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돌봄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돌봄센터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발달 장애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이 조례 제5조 각 호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를 돌봄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과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과 시설물을 수탁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와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군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 각 항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사유 없이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거나 지시·감독,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5.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수탁자의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이 조 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수탁자는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돌봄센터 운영에 사용하는 진안군 소유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비품·집기는 군에 귀속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기구 및 인력) 군수는 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관계법령과 소관부처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비용의 징수) ① 시설의 장은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아동의 보호자 등에게 1인당 1일 실비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장은 시설의 일상적 운영 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보호 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돌봄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천안시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2. 12.]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418호, 2022. 12. 12., 제정]

이 조례는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시내버스운송사업을 말하며, 이하 “시내버스”라 한다) 서비스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내버스의 불친절 개선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의 난폭운전 개선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의 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4. 시내버스 서비스 이행표준 제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

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대중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천안시의회의 의원

나. 교통 관련 분야의 교수, 연구원 등

다. 시내버스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

는 사람을 말한다)

라. 교통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 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교통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중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보궐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보궐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심의 결과 활용) ① 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시내버스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적용 조
례) 위원에 대한 수당 등 위원회운영
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다

만,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은 제
외한다.

서산시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기보일러 설치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12.]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756호, 2022. 12. 12., 제정]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고유가시대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서민가계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연탄보일러를 교체함에 있어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기보일러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탄보일러”란 연탄을 원료로 하여 난방을 주로 하는 가정용 연탄보일러를 말한다.
2.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기존 연탄보일러를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기보일러(이하 “재생에너지 전기 보일러”라 한다)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생에너지”란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를 말한다.
4. “재생에너지 설비”란 재생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5. “보조사업자”란 일반가정에서 연탄보일러를 교체 설치하는 가구(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기존 연탄보일러를 재생에너지 전기 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주의 가구
2. 최근 3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가구(기산일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함)

제4조(지원신청) 보조사업자가 제3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자 선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1. 기초생활수급 가구
2.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포함)
3. 소년·소녀가장 세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가구
5.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일반가구

②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세대주가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사업 포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세대주가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사업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사업 완료 현장을 확인하고 보조사업자의 계좌에 보조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제8조(지급액) 연탄보일러 교체를 설치한 1가구당 지급받는 보조금액은 보일러 설치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액이다.(단, 보조금액은 전기보일러 5kw 및 태양광발전 3kw 용량에 대한 설치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시설의 유지관리) 보조사업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지원된 시설을 철거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등 정상 가동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조사업 완료·정산보고) 시장은 완료된 보조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완료·정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화순군 식품접객업소 가스 정기검사비 지원 조례

[시행 2023. 1. 1.]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2957호, 2022. 12. 8., 제정]

이 조례는 화순군에 있는 식품접객업소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정기검사”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정기검사비 지원대상은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식품접객업소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절차) ① 정기검사비를 지원 받으려는 식품접객업소 대표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정기검사비 지원 신청서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 받은 정기검사 증명서 및 검사비 납부 증빙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검토 후 다음달 15일까지 별표에 따른 정기검사비를 지급한다.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식품접객업소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정기검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접객업소 정기검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중구 채무 위기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1. 28.]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1364호, 2022. 11. 28., 제정]

이 조례는 가게 부채 등 채무상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광역시 중구 채무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채무위기 가정”이란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절차 등 채무조정을 위해 상담 중에 있거나 개인회생, 파산 선고 등 법원의 결정을 받은 구민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중 채무조정 상담 진행자
2. 구민 중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채무 위기 가정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 대상자에 대한 서류 발급 지원
2. 제3조제2호 대상자에 대한 취업 우선 연계
3. 채무 위기 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간·공공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채무 위기 가정 지원을 위하여 부산시에 소재한 관련 센터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23. 5. 25.]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607호, 2022. 11. 25., 제정]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내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회용컵 사용·배출을 억제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친환경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회용컵”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가능한 컵을 말한다.
2. “1회용컵”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1회용컵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1회용컵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컵 사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민은(이하 “구민”이라 한다)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1회용컵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컵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다회용컵 사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구민참여방안 등
4.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

보 방안

5. 그 밖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비 지원 등) 구청장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컵 구입 및 사용 등을 위한 관련 비용
2. 다회용컵 구입 및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민간 및 관계기관 교류·협력) 구청장은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업주,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과 교류·협력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충청남도 공동주택 재난안전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충청남도 공동주택 재난안전 관리방안 의정토론회



때 · 곳

2022. 12. 8.(목) 14:00 ~ 16:00 / 천안 타운홀

참 석

50여 명(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지역주민 등)

주 제

충청남도 공동주택 재난안전 관리 방안 모색

- ❖ 공동주택은 우리 도의 다수의 도민주거를 책임지고 있는 소중한 보금자리로, 최근 들어, 공동주택의 화재나 각종 붕괴 사고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과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음.
- ❖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 운영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함.

I 총 평

- 본 토론회는 도내 공동주택의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 운영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 준비한 토론회로,
 - 관계 공무원, 전문가, 도민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현재 정책의 문제점과 공동주택 안전의 발전 방향을 제안함.
 - 토론회 중 주요 논의된 내용으로는 도의 공동주택 재난안전관리 전문 담당 부서 부재, 으뜸아파트 사업 참여율 저조, 전기자동차 충전소 화재 대처 시설 미흡 등의 문제점이 나왔으며,
 - 조속한 충남공동주택재난안전센터 설립, 으뜸아파트 적극적 참여 유도 및 시상금 상향, 전기 자동차 충전소 열화상카메라 설치 및 방화셔터 설치, 공동주택 별 화재 대비 질식소화포 지원 등이 과제로 도출되었음.
- ⇒ 토론회의 주요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향후 계획과 추진상황을 지속적 관리하고자 함.

1 주제발표 (1인)

○ 김홍수 센터장 (충남아파트공동체문화센터장)

『 충청남도 공동주택 재난 안전관리 방안 』

- 충청도 내 공동주택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 재난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수 주민의 밀집 거주 특성상 공동주택 재난안전사고시 피해 규모가 매우 높음
-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의 특징으로 24시간 365일 주민 거주 특성상 재난안전 사고 가능성이 항시 상존하며 개인 및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대표적으로 화재사고와 같은 경우 전체 화재 10건 중 1건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며 사망자 비율은 발생 비율에 비하여 높음, 또한 계단실, 복도 등 구조적 특성 상 인접세대로의 연소확대 및 연기유입 등의 피해 확산이 가능함.
- 각 주체 별 한계로는 지자체 입장에선 전담부서의 부재와 민원업무의 과다로 인한 재난안전업무가 후 순위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으며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경우 안전불감증이 만연하고 관리비 상승의 이유로 안전관리 비용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함.
-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의 재난 담당 부서 신설 및 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며, 입주민 및 관리자 대상으로 안전의식 제고 사업 및 관련 홍보 캠페인을 확대해야 함.

2 지정토론 (5인)

① 김도훈 의원 (충청남도의회 의원)

- 재난이란 광범위한 인적·물적·경제적·환경적 피해로 인해 공동체나

사회기능의 심각한 붕괴 현상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됨.

- 공동주택의 재난상황은 대부분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며 재난 발생시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한 시점임, 허나 실제로 공동주택을 둘러보면 출입통로 및 비상계단에 물건을 방치하고 방화문을 항시 개방하는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을 자주 볼 수 있음.
- 이를 지자체와 관리주체는 항시 관리점검을 시행하여 사고예방과 동시에 재난 발생시 즉각적인 초동대치 및 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

② 구형서 의원 (충청남도의회 의원)

- 2021년 8월 11일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장 세차 차량의 영업용 LPG 가스통에서 누출된 가스가 폭발하면서 차량 피해 및 재산 피해를 입음.
- 불에 타기 쉬운 배관용 보온재로 불길의 쉽게 번지고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피해가 컸으며 화재 수신기 분석 결과는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정지한 흔적이 있었음.
-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여 스마트 공동주택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과 구체적인 공동주택 재난안전 매뉴얼 제작 및 보급을 실시하고 이를 주거민들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③ 노윤철 과장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과장)

- 공동주택 입주주민들의 안전의식 수준향상을 위하여 2007년부터 그린홈 으뜸아파트 선정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사업내용은 준공 후 5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육아·고령 친화단지 조성, 우수사례 등 6개 분야의 서면

평가와 현지평가를 통하여 선정하고, 분양부문 2단지에 각 3천만원, 임대 부문 1단지에 2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2022년까지 총 46개 단지를 지원함.

-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음. 첫 번째로 관리주체의 관리비, 공사·용역비, 잡수입 집행내역 상세 공개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이권개입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홈페이지,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시스템에 미가입 되거나 관리비를 미공개하는 단지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을 통하여 매 달 점검 후 익월에 지도·감독하고 있음
- 두 번째로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매년 개정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함.
- 세 번째로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 관리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립으로 현재 충남연구원 전략과제를 통하여 설립 필요성과 역할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 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립 타당성분석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통하여 설립방안을 구체화할 것임.

④ 김미수 회장 (천안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회장)

- 최근 보도에 따르면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의 화재 빈도는 오히려 내연 기관 차량이 약간 높은 편이나 화재 진화에 따른 문제로 전기차의 위험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됨.
- 현재 전기차량 화재 시 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수조에 차량을 넣는 방법과 질식 소화덮개로 차량을 덮어 차량의 공기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으나 수조에 차량을 넣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질식소화 덮개가 유일한 해법으로 일선 소방서에도 질식소화덮개로 소방훈련을 시행 중임.
- 이런 전기차 화재에 대응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해법을 기다리기 보다는

충청남도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⑤ 배장환 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장)

- 현재 공동주택 관리자들이 관리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 중 승강기 안전검사 기준강화로 인해 설치 후 15년이 경과된 노후 승강기를 계속 쓸 경우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며 강화된 항목과 부품을 구하지 못하는 노후 승강기가 대규모로 교체 대상이 될 상황이라는 것임
- 이에 60%의 도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노후 승강기 교체에 따른 공동주택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후 승강기에 교체에 따른 지자체의 지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토부 및 지자체 접수 민원이 2016년 3만 6천 건에서 2019년 4만 4천 건 증감소음 민원은 2016년 1만 9천 건에서 2020년 4만 3천 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추세 보여 충청남도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센터의 신속한 설립이 필요함.

③ 마무리 발언 (신한철 의원)

- 도내의 공동주택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하여 오늘 토론을 통하여 많은 문제점 지적과 정책 제안이 도출되었음, 특히 전기차 충전소의 화재 대책방안에 대하여 열화상 cctv 및 방화셔터 설치, 질식소화포 지원 등은 시급한 사항으로 도에서는 속히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 또한 충남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 및 운영 방안 연구용역에 따른 신속한 설립을 추진을 하여 보다 체계적인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토론 과제 및 결론

〈과 제〉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대책 마련
2. 그린홈 으뜸아파트 선정사업 참여율 향상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 시설 관리
4. 노후 승강기 대규모 교체 대책 마련

〈결 과〉

- 조속한 충청남도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 설립
- 전기차 충전소의 열화상 cctv 및 방화셔터 설치 추진
- 공동주택 별 질식소화포 구비 대책 마련
- 그린홈 으뜸아파트 시상금 상향 및 적극 홍보
- 노후 승강기 교체시기 관리 철저 및 지원대책 마련



후속조치 (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등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 부산광역시의회, 2022 케이블TV 방송대상에서 “균형발전파트너스상” 수상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국 광역 시도의회장단 ‘자체 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移屬) 건의안’ 채택
-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 가이드북 제작

부산광역시의회

2022 케이블TV 방송대상에서 “균형발전파트너스상” 수상

LG헬로비전 부산방송과의 협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높이 평가

부산광역시의회는 11월 30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 케이블TV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균형발전파트너스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방송대상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함께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부산시의회는 지역을 위해 힘쓴 개인과 단체를 종합유선방송 사업자(SO)의 추천을 받아 수여하는 「균형발전파트너스상」을 수상한다. 이는 부산시의회가 LG헬로비전 부산방송과 협업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 모델을 구축한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결과이다.

부산시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후, LG헬로비전과 협업하여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한 의정뉴스 및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캠페인광고 등을 연중 협력하여 제작·송출해 왔다.

이번 케이블TV 방송대상 시상식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SO) 지역채널과 YTN, 연합뉴스 등 주요 보도채널 등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국 광역 시도의회장단 ‘자체 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移屬] 건의안’ 채택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서 만장일치 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산하 이속(移屬) 건의안’이 24일 경남 진주 동방관광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2년도 6차 임시회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자체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移屬) 건의안’은 감사기구의 장을 비롯한 감사 담당자를 행정사무 감사·조사권을 가진 지방의회 소속으로 전환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자체 감사체제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지자체 감사기구의 장을 비롯한 감사 담당자가 피감기관인 집행부 소속이어서 내실 있는 감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 9월 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로의 소속 전환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으며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공식 안건으로 제출했다.

특히 예산 편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 결산 감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거론됐다. 건의안에는 감사원에서 기획재정부의 결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을 검사하는 중앙부처의 절차와 같이 지자체에서도 결산보고서에 대한 자체감사기구의 점검을 거쳐 지방의회에 최종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함께 담겼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상 의장이 제출한 ‘자체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移屬) 건의안’ 외에도 ‘재외동포청 신설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등 10여 안건이 가결되었으며,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상병헌 의장은 “자치단체장이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감사 공무원을 임명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체제는 감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힘든 구조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지방 감사기구를 지방의회에 귀속시키거나 주민직선에 의한 감사관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지방의회와 자체감사기구의 실질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

경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 가이드북 제작

의회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분야별 상세 가이드 제공

경남도의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맞춤형 가이드북을 제작한다.

경남도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의회사무처장, 전 담당관·수석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의원 의정활동 가이드 연구」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는 올해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제12대 의회가 새롭게 개원됨에 따라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체계적인 지침서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다.

총 9개의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는 ▲지방의회의 개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지방의원의 신분과 의무 등 기본적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의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하였다.

아울러, ▲의원 연구단체 ▲의정보고서·매니페스토 ▲정책지원관 제도 등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수록하고, 미국·영국 등의 지방의회 사례를 소개하여 의회 선진화에도 한 발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연구는 도민·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도의회·의정 활동에 대한 인식, 입법·예산 등 분야별 요구 활동 등을 수록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회사무처 이광옥 입법담당관은 “이번 제12대 의회의 경우 초선의원 비율이 70%에 달한다”면서, “의원들께서 조기에 원활하게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창원대학교(책임연구원 행정학과 송광태 교수)에서 수행하였다.



최근 제·개정 법령



- 민법
- 사립학교법
- 출입국관리법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3개월의 법정기간을 적극적인 선택 없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더라도 미성년자 상속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하여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성년이 된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에도 미성년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의 미성년자 상속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입법조치가 바람직하다는 다수의견이 있었음.

이에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미성년자 상속인의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제758조제3항의 내용이 1957년의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전이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률공포 관보 또는 현행 법령집 등에서 “전이항”과 “제이항”으로 혼재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과 수목의 재식·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부담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2항의 경우”로 명시함(제758조제3항).

나. 미성년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의제)한 경우 미성년 시기의 법정대리인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이 된 후 본인이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음(제1019조제4항 전단 신설).

다. 현행 제1019조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에 따라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019조제4항에 따라 신설되는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제1019조제4항 후단 신설).

라. 제1019조제4항에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신설함에 따라 해당 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현행법의 한정승인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되, 입법취지에 맞게 현행 제10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한정승인 전의 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함(제1030조, 제1034조제2항 및 제1038조제2항).

마.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명시하되, 제1019조제4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단순승인하였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되는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설되는 것이므로 그 보호범위를 실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일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경우와 이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나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이 의제되고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까지 제1019조제4항이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특례를 규정함(부칙 제2조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 2023. 6. 14.] [법률 제19066호, 2022. 12. 13.,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대학 내에서 교수들의 연구비 관련 비리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은 해당 교수에게 대부분 횡령 또는 업무상의 횡령이 아닌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고 있으며, 사기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교수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의 경우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함)의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

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3. 6. 14.] [법률 제19070호, 2022. 12. 13.,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맞추어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로서 권리구제 절차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강제퇴거명령서 집행 유예, 보호의 일시해제 등을 규정하여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외국인사망자 정보 제공을 통해 사망한 외국인 명의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입세대 열람 시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의 체류확인서를 열람·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이 임차한 건물을 매수하려는 자 등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며, 외국인신분증의 진위 여부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근거를 마련하여 체류외국인의 경제생활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로 재판, 수사 및 권리구제 절차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강제퇴거명령서 집행 유예, 보호의 일시해제 등의 특칙을 마련하여 범죄 피해 외국인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제25조의2제1항제4호, 제46조의2 신설).

나. 법무부장관이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외국인 사망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입국심사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78조제2항).

다.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성명과 체류지 또는 거소의 변경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열람·교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제88조의3 신설, 부칙 제3조 제2항).

라.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의 비대면 실명확인 등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제88조의4 신설, 부칙 제3조제2항).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086호, 2022. 12. 13., 전부개정]

1 개정이유

동물원·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법의 제정(2016년) 이후 동물원·수족관이 국가 관리체계로 편입되었으나, 현행 규정상 동물원 및 수족관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사람과 동물의 질병·안전관리에 취약하며, 상업적 목적에 치중한 일부 소규모 동물원·수족관의 운영·관리상 문제도 지속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이후 보유동물 방치 문제, 돌고래 등 동물원·수족관 보유동물 폐사와 같은 일련의 사례로 인하여 동물원·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동물원·수족관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동물 이동전시 금지 등을 통한 동물복지 제고 및 질병·안전 관리 강화 등 전반적인 동물원·수족관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에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명존중 가치 구현’을 명시하여 동물원·수족관의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함(제1조).

나.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도입(제8조)

현행법상 동물원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보유동물 복지확보 및 질병·안전관리에 취약하였는바, 기존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여 허가요건 충족 시 동물원·수족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강화함.

다.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영업정지가 보유동물의 적정 관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어 보유동물이 생태계 등에 유출되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및 제11조).

라. 동물원·수족관 허가·점검 시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위촉하여 허가권자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제12조).

마. 동물원·수족관의 휴원신고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하고, 인수공통 감염병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후신고를 가능하도록 하여 동물원·수족관의 미개방에 따른 보유동물 관리를 강화함(제13조).

바. 동물원·수족관 운영자와 근무자의 금지행위 신설(제15조)

- 1) 동물원·수족관 보유동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이동전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운송스트레스 등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함.
- 2)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기 등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여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함.
- 3)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의 동물원·수족관의 신규 보유를 금지함.

사. 동물원·수족관에 대한 관리 강화 등(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동물원·수족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지침 배포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원·수족관 보유동물의 건강상태 정기검사 및 질병관리지침 배포 근거를 마련하며, 동물원·수족관 근무자에 대한 법정교육 이수 의무화 및 법정교육 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

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원·수족관 등록을 한 자는 신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되,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신법에 따른 허가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함(안 부칙 제7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제정]

1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준 및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내용 및 절차 규정(제3조부터 제5조까지)

-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화재발생 현황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정책의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계절별·소방대상물별 화재예방대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 2)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화재예방 관련 통계의 세부항목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제6조)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방법 및 절차의 정비(제7조 및 제8조)

- 1)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으로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2) 효율적인 화재안전조사와 화재안전조사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 화재안전조사의 목적에 따라 종합조사 외에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부분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3) 소방청장 등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함.

라. 화재안전영향평가 기준 마련 및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구성(제21조 및 제22조)

- 1)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이나 정책의 화재 위험 유발요인, 법령이나 정책이 소방대상물의 이용자 특성, 화재피해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된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
- 2)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는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에서 화재안전 관련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된 사람 및 한국소방안전원·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에서 화재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된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마련(제24조)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으로 하고, 소방청장 등이 소방시설의 설치 및 안전점검, 소방용품의 제공, 전기·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마련(제34조)

복합건축물 등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유권, 관리권, 점유권에 따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되,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화재 수신기 및 소화펌프가 설치된 경우 등에는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사.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대상 및 절차 마련(제43조, 제44조 및 별표 7)

- 1)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로서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을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과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등으로 정함.
- 2) 화재예방안전진단의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및 불량의 안전등급으로 구분하고,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우수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양호 또는 보통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그 다음의 화재예방안전을 받도록 하는 등 실시 절차를 규정함.

아.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기준 마련(제46조 및 별표 8)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과 장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마련하고, 소방기술사 1명, 소방시설관리사 1명, 전기안전기술사·화공안전기술사·가스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 중 1명을 각각 두도록 하며, 화재예방안전진단과 관련된 소방·전기·가스·위험물·건축 분야의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지정기준을 정함.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관련질의
-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질의
- 「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질의
-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관련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취약예술계층보다 넓은 범위의 예술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 관련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보다 넓은 범위의 예술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
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22-0324, 2022. 12. 8., 전라남도 영광군]

의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 즉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제1항)고 규정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제2호),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제5호라목)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취약예술계층에 대해서는 전국에 걸쳐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이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질의요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취약예술계층보다 넓은 범위의 예술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상시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조례로 규정
할 수 있는지**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13조제5항 관련**

질의요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상시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조례로 규정
할 수 있는지?

[의견22-0338, 2022. 12. 7., 경기도 고양시]

의견

불법광고물에 대한 상시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 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상시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하 “고양시조례안”이라 한다)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고양시조례안에서는 불법광고물 양성화의 의미나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불법 광고물 양성화 조치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허가나 신고 요건을 갖추었으나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하였거나, 인허가를 거쳤으나 표시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사후 인허가를 통해 적법화하는 절차로 보입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으로서 임의적·비강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 내지 동의를 얻어내어 행정상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행정지도는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더라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내용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고양시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상 허가의무나 신고의무에 대해 조례로 특례를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서는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상시 양성화를 허용할 경우 법령을 준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다수의 주민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 시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상시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주민이 보행로나 차량 통행로로 이용하는 개인 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일반 주민이 보행로나 차량 통행로로 이용하는 개인 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의견22-0308, 2022. 12. 7., 경기도 부천시]

의견

이 사안의 경우 토지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가 있다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규정하려는 사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마목 및 거목에서는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과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바, 「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부천시조례안”이라 한다)의 입법취지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별도로 출입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개인 또는 공동이 소유한 토지인 공공이용도로를 정비하여 쾌적한 통행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은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천시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공사 및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이용도로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원내용은 공공이용도로의 보수(제1호), 공공이용도로의 부속시설물(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천시장이 조례에 규정하려는 내용이 “지원”이라는 조문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천시장이 공공의 사용을 위해 개인 소유의 토지를 유지·관리하겠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사항이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천시조례안 제4조에서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소유자는 토지승낙서, 공동주택 관리자는 입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불편사례 및 개선의견서를 포함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시장은 지원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하고(제2항), 지원이 불가할 경우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제3항)을 보아 부천시조례안 제3조에 따른 공사 및 보수 등 그 유지·관리의 내용이 토지 소유자나 관리자 등의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가 있다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리의 설치, 분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할 수 있는지 등**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제3조 등 관련**

질의요지

가. 행정리의 설치, 분리, 폐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사항)을 규정한 조례개정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할 수 있는지?

나.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제4조 별표 1에서 규정한 행정리,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할 수 있는지?

[의견22-0356, 2022. 11. 30., 충청북도 옥천군]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조례 개정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가. 질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조례의 제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의안의 발의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려는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있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서 그러한 조례안의 제안권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닌 한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리되어 각기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

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 ·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4조부터 제119조의 규정과 같은 법 제125조의 행정기구와 공무원에 관한 규정 등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관리 · 집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기구의 설치권한과 직원의 임면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조례의 제안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서는 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리를 2개 이상의 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리를 하나의 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행정리를 따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리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따로 두는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세부 단위이자 명칭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소속된 행정기구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전속적인 권한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행정리를 설치하는 목적이 행정사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점도 있지만 주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행정리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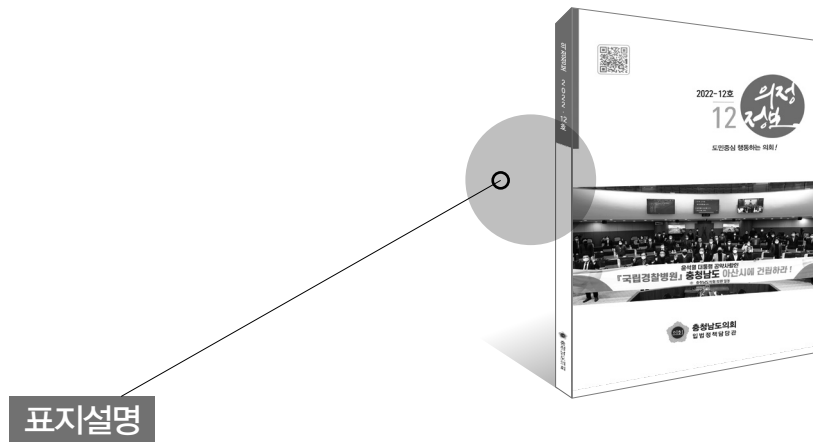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면 행정리의 설치, 분리, 폐지에 관한 구체

적인 기준(사항)을 규정한 조례개정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서는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리 뿐만 아니라 행정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도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세부 단위이자 명칭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소속된 행정기구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조례안의 제안권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질의요지와 같은 행정리, 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을 개정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도의회, 국립경찰병원 충남 아산시 유치 촉구

- 다양한 광역교통망 연계 및 경찰 유관기관 집중 등 입지 여건 탁월 -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30일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립경찰병원의 충남 아산시 유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은 “아산시는 KTX 천안아산역, 수도권 전철, 장항선 등 광역교통망이 연결되어 있고, 더 나아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많은 기업이 모여있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치지역은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대학이 있어 입지 여건이 탁월하고, 인근에는 신정호 아트밸리, 온양온천 등 풍부한 관광자원까지 구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아산시는 전국 최초로 경찰인재개발원에 우한교민을 포용했다”면서 “국가재난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거점 국립병원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220만 충남도민의 의지를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립경찰병원이 충청남도 아산시에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건의안을 채택했다.

’22. 11. 30. 보도자료-

2022.12.14.(수)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충남 아산 유치 확정



의정정보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2-12호

- 발 행 일 | 2022년 12월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연 락 처 | (041) 635-5124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